<u>주요내용 변경 대비표</u>

- 펀드명 :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변경 내용 : 펀드명 변경, 모펀드 추가, 모펀드 투자비중 변경, 보수인하, 환매수수료 삭제 및 운용역 변경 등

등		
구분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	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	KB <u>한국 대표그룹주</u>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
	(주식)	<u>제2호</u> (주식)
신탁계약서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2조(용어의 정의)
	9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	9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
	자증권을 말한다.	자증권을 말한다.
	가.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	가.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
	탁(주식)	탁(주식)
		(추가)나.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모투자신탁
		<u>(주식)</u>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
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
	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삼성&현	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KB <u>한국</u>
	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"으로	<u>대표그룹주</u>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<u>제2호</u> (주
	한다.	식)"으로 한다.
	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	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<u>국내주식에 주</u>
	로 투자하는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	<u>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</u> 의 집합투자증권을 법
	모투자신탁(주식)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에서 규	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
	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	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	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
	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	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
	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	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	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
	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한다.	신탁 자산총액의 <u>80%</u> 이상으로 한다.
	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	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
	10%이하로 한다.	<u>20%</u> 이하로 한다.
	제39조(보수)	제39조(보수)
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
	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	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
	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	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
	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	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
	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	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

	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	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
	로 한다.	로 한다. 다만, 아래 다목의 신탁업자보수는 제2
		조 제9호에 따른 모투자신탁의 평균 투자비율에
	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	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
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6.5
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2.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	2.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
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25
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3. ~ 7. (생략)	3. ~ 7. (좌동)
	8.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	8.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
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9.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	9.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	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
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	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3.0</u>
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
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	제41조(환매수수료)	제41조(환매수수료)
	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	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
	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	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
	1.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	1. <u>최초설정일로부터 2019년 05월 08일까지 환</u>
		<u>매청구 하는 경우</u>
		가.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
		<u>2. 2019년 05월 09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:</u>
		해당사항 없음
투자설명서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	5. 운용전문인력 현황	5. 운용전문인력 현황
	- 책임: 윤동환 / 부책임: 이명우	- <u>책임: 심효섭</u>
※ 신탁계약서	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
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	

- **변경(예정)일** : 2019년 05월 08일